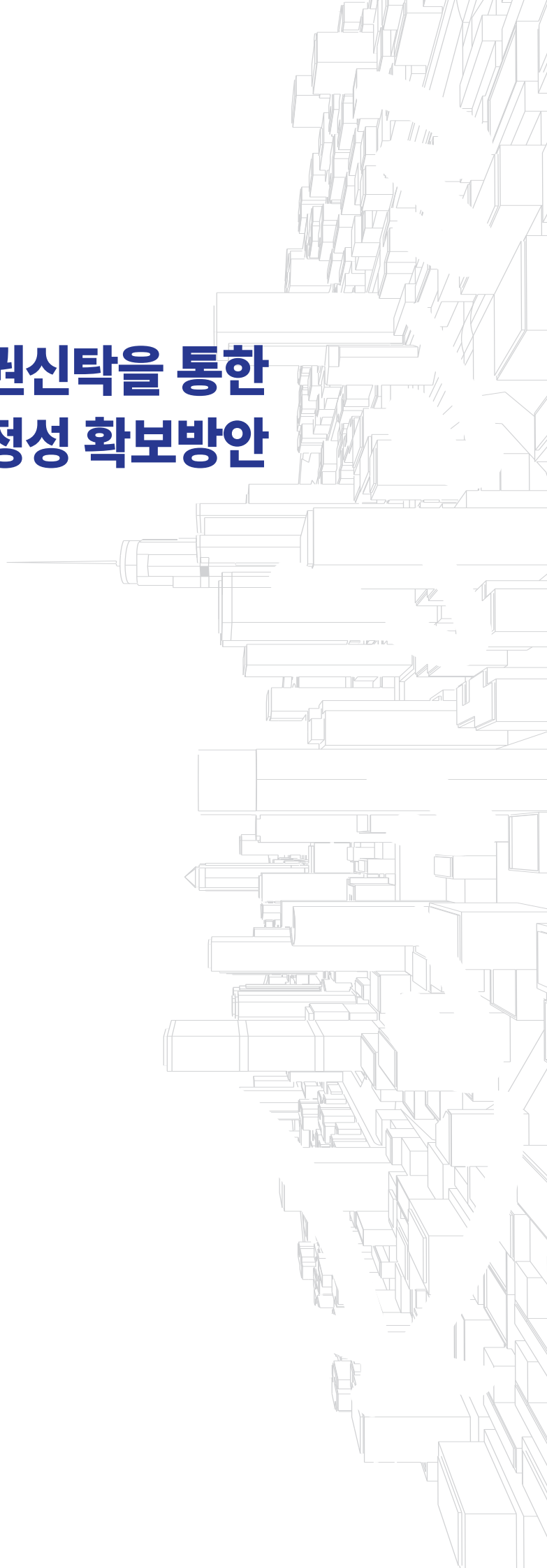


건설공사 대금의 채권신탁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방안

이 호 일 · 박 승 국

2026. 04



건설정책리뷰 2025-10

건설공사 대금의 채권신탁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방안

이 호 일·박 승 국

2026.04

요 약

-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및 지급보증 면제요건의 발생 요건이 하수급인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아울러,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제3자 직접지급 합의의 법적 성격과 제3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를 검토하며, 하도급대금의 압류금지 또는 채권처분권 제한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통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설산업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재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를 가지는 산업임.
 - 이와 같은 구조에서 하도급대금은 실질적으로는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형식상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종속되는 구조를 가짐.
 - 그 결과, 수급인의 채무 관계, 금융기관과의 담보 설정 여부, 제3채권자의 가압류·압류, 회생·파산 절차 개시 여부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3자의 권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하수급인 보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수급인의 피압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항하지 못하는 법적 효력상의 한계를 가짐.

 -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압류의 대상이 됨.
 -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금융권 대출, 보증채무 이행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또는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압류가 선행된 이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하는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이중변제 또는 압류채권의 무단 처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함.

- **수급인 파산 시 공사대금 채권은 파산재산으로 분류되어 발주자의 직접지급이 제한됨.**

 - 수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분류됨.
 - 이 경우 공사대금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공평 배당의 대상이 됨.
 - 하수급인은 법률상 별도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됨.
 -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회생·파산재단에 편입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할 수 없음.
 -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강행할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이로 인해 발주자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제도의 취지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법적 위험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영국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Project Bank Account(PBA)’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자 및 근로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사례로 평가됨.**

 - 영국의 PBA 제도는 PBA 계좌 내 자금을 법적으로 신탁재산의 지위를 부여하여 수급인의 고유재산과 명확히 분리함. 이에 따라 수급인 부도 시에도 제3채권자가 이를 압류하거나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수 없는 도산절연 효과가 발생함.
 - 발주자, 수급인, 수급업자는 ‘PBA 신탁 협약(Trust Deed)’을 체결하며, 금융기관은 해당 협약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함.
 -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PBA 계좌에 입금하면 수일 내에 하수급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 수급인을 경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지연이나 유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영국 중앙정부(Cabinet Office)는 공공공사에 대해 PBA 적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PBA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개선방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신탁 의무 및 수탁자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우선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를 두고, 신탁계약에서 정한대로 공사대금을 집행할 경우 현금 지급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급인의 공사대금 신탁 설정 의무와 하수급인 등에 대한 우선 지급 의무를 명문화해야 함. (건설법 제34조제10항·제11항 신설)

- 공사 규모, 공공성, 하도급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신탁 설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탁 설정 시기, 신탁 범위, 수탁자 선정, 신탁계좌의 특정 등 절차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건산법 제34조의3 신설)
 - 신탁재산을 수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된 독립 재산으로 규정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체납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급인에 대한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은 도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도산절연 효과를 명시해야 함 (건산법 제34조의4 신설).
 - 채권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계좌에 우선 직접 지급하도록 발주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건산법 제35조 개정).
- (개선방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신탁과 직접지급 제도의 연계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사대금 채권신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 내용에 하도급대금의 우선 지급, 지급기한 준수, 임의적 지급 변경의 제한 등 공정거래 당국의 하도급 보호 원칙이 반영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법 제13조의4 신설)
 - 공사대금 채권이 신탁재산으로 이전되는 경우,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은 수급인의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도산절연 및 집행 차단 효과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제3자의 권원으로 인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법 제14조의2 신설)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의 구조와 한계 | 3 |
| 1.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제도 현황 | 3 |
| 2. 현행 하도급대금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 7 |
| 3.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 12 |
| 4.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규정 도입 | 17 |
| 5. 영국의 PBA(Project Bank Account) 제도 | 19 |
| 6. 소결 | 32 |
| III. 채권신탁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개선방안 | 33 |
| 1.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의 필요성 | 33 |
| 2. 채권신탁 제도의 법적 근거 | 36 |
| 3. 채권신탁 구조와 하도급대금 보호 메커니즘 | 39 |
| 4.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 45 |
| IV. 결론 | 53 |
| 참고문헌 | 55 |

1. 서론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다단계 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으로, 발주자-수급인-수급사업자-하수급사업자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계약 관계 속에서 공사가 수행됨.
 - 이러한 구조는 공정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대금 지급 단계가 다층화될수록 하위 단계 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특히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자금 사정,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 관계, 제3채권자에 의한 압류·가압류,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거래상 분쟁을 넘어,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불안정,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 저하로 확산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수 문제는 개별 사업자의 귀책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급보증 제도와 직접지급 규정 간에 법리적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특히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3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그 법적 형식이 「민법」상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3채권자의 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이 외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의 법적 구조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면제 요건이 하수급인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둘째, 3자 직접지급 합의의 법적 성격과 제3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를 검토함.

- 셋째,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또는 채권처분권 제한과 같은 구조적 개선 방안의 법리적·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II.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의 구조와 한계

1.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제도 현황

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의 개요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논의의 핵심 쟁점은 도급대금 채권에 이미 제3자의 가압류·압류·전부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설정되었거나 수급인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음.
 - 건설공사의 도급대금 채권은 통상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형성되며, 수급인의 일반채권자에게는 중요한 채권 보전 및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기능함.
 - 그러나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재무구조 악화, 거래 관계 붕괴 등의 상황에서 일반채권자들이 해당 도급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압류·전부명령을 집행하게 되면, 그 채권은 더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됨.
- 문제의 본질은 해당 도급대금 채권 내에 이미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 등 건설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실질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형식상 발주자의 채무자는 수급인으로만 인식되고 하수급인은 직접적인 채권자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에 있음.
 - 이로 인해 발주자 입장에서는 도급대금 채권에 제3자의 집행권원이 설정된 경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 및 상생협력의 취지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이중 지급 책임, 손해배상 위험 등을 우려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구조적 유인이 발생함.

나. 현행 법제 및 제도의 구조와 한계

(1) 하도급대금 지급과 제3자 가압류·압류와의 관계

- 건설공사 대금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제3자에 의한 가압류·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금융기관 차입, 보증채무 이행 등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설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도급대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이미 가압류·압류·전부명령이 집행된 상태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이중 변제 또는 채권의 무단 처분에 해당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 현행 판례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수급인에 대하여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공평하게 배당되는 것이 원칙임.
 - 이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며,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압류된 상황에서는 하수급인의 지급 기대권이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별도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채권으로 취급되며, 건설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비·자재비·장비대 등 실질적인 현장 운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그 결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집행권원이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이미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권자보다 열위에 놓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주요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

(2) 직접지급 및 지급보증 제도의 한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지급 지연 또는 부도 위험으로부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
 - 그러나 공사대금 채권에 이미 제3자의 가압류·압류·전부명령이 설정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문제나 이중 변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지급 제도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수급인의 부도 또는 지급불능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사후적 보호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 우선 보증금액, 보증대상 범위, 보증사고 인정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급 장애 상황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압류와 같이 부분적·잠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증사고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보증기관이 사고 인정을 유보·회피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음.
 - 또한, 보증 한도, 면책 사유, 보증 제외 규정 등으로 인해 제3자 권원 행사로 인한 공사대금 지급 중단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와 지급보증 제도는 모두 수급인의 지급 위험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나, 공사대금 채권에 제3자의 권원이 개입하는 순간 하도급대금 보호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는 공통적인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이는 현행 하도급대금 보호 체계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이원적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설계되어, 제3자 집행권과의 충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제도적 공백으로 평가됨.

(3)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 실효성의 한계

- 현행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는 공사대금 채권에 제3자의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측면이 강함.
 - 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수급인의 재무구조 악화, 금융기관 차입 확대, 보증채무 이행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그 결과 하도급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직접지급 제도와 지급보증 제도는 제3자의 집행권원이 개입하는 순간 법적 충돌과 책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며, 제도 본래의 보호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 현행 하도급대금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은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금 지급 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건설법 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은 하도급법과 유사하게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며, 특히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의 이용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음.

〈표 2-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체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체·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하도급법과 병행하여 발주자의 직접 지급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표 2-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우선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급인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한 지급 지연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또한 「하도급법 제13조의2(하도급대금 지급보증)」는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인의 부도·지급불능 등 사후적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는 수급인의 부도, 하도급대금의 2회 이상 지급 지체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을 경유하지 않고도 대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적 보호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표 2-3〉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찾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표 2-4〉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0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이하 생략〉

다. 제3자 권리(가압류·압류) 경합 시 법적 한계점

- 「대법원 2001다64769 판결」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의 집행·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제3채권자의 권리가 하수급인에 우선함.
- 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인의 부도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고 판시함.
 - 다만, 이러한 직접지급 규정은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통해 집행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집행보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함.
- 이 판례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제도가 민사집행법상 제3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후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보호의 법리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줌.
- 특히 수급사업자는 수급인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금융기관 등 전문 채권자는 신용정보·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가압류·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가 대금 수령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상대적으로 정보와 집행 역량이 우월한 제3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3.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가.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를 전제로 수행됨.
 -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수급인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3자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대금지급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이는 발주자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제3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됨을 의미함.
-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수급인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수급인의 신용 위험을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수급인의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 특히 이 제도는 단순한 사후적 구제 수단이 아니라, 수급인의 도산 가능성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위험 이전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수급인의 재무 상태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하수급인의 대금 회수를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3자 권원 개입 시 그 보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표 2-5〉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무상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는 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3자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임.
- 이러한 면제 규정은 지급 경로가 안전하게 통제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 불필요하다는 제도 도입 당시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직접지급과 지급보증의 법적 성격을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법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

- 직접지급 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경로를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설정할 것인가

에 관한 문제인 반면, 지급보증 제도는 채무자인 수급인의 신용도 및 지급능력에 따른 지급불능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

- 즉, 지급 경로의 변경이나 전산화는 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의 도산, 자금 경색, 신용 위험 그 자체를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은 지급 경로가 직불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 위험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하수급인의 핵심 보호 장치를 해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3자 합의를 통해 직접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신용도가 악화되거나 도산·회생 절차에 진입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여전히 대금 미회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위험은 지급 경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현행 하도급대금 보호 체계는 지급보증, 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뿐,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오히려 특정 보호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보호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제도 간 중첩 보호가 아닌 상호 배제 구조를 초래하고 있음.
- 그 결과 하수급인은 직접지급 합의나 지급관리시스템 적용을 수용하는 순간, 지급보증이라는 최후의 안전망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제도 선택이 보호 강화가 아니라 보호 축소로 귀결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

〈표 2-6〉 하도급법 시행령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략〉

나. 직접지급 합의의 유형 구분

- 3자 직접지급 합의는 외형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전혀 상이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 대법원은 이러한 직접지급 합의를 그 실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첫째,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합의임. 이 경우 해당 합의는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주체가 수급인에서 하수급인으로 이전되는 법적 효과를 가짐.
 - 둘째, 수급인이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만 기성고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합의임. 이 유형은 채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지급 경로만을 변경하는 합의에 해당함.
-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3자 직접지급 합의가 위 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관행적인 형태로 체결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합의가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지급방법 변경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그 결과 제3자의 가압류·압류, 회생·파산 절차 등과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과 해석상 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다. 채권양도 방식 직접지급의 한계

- 대법원은 채권양도에 해당하는 형태의 3자 직접지급 합의라 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임.
-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실무적으로 하수급인에게 과도한 형식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하수급인은 계약 구조상 수급인에 비해 교섭력이 현저히 열위에 있는 지위에 놓여 있으며, 나아가 발주자와 수급인을 상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형식의 직접지급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임. 그 결과, 하수급인은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한편, 기성고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는, 법리상 채권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에 불과함. 따라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압류된 경우,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이는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기성고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급인의 채무 상태나 외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이 일방적으로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함. 결과적으로 현행 법리는 공사의 실질적 수행 주체인 하수급인의 기여와 위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라.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제도적 한계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하도급대금의 흐름을 전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급인의 임의적인 대금 유용을 방지하고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특히 공공공사 영역에서는 시스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급 지연 및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등 가시적인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어디까지나 대금 지급 절차를 관리하는 기술적·행정적 수단에 불과하며, 하도급대금의 법적 지위를 수급인의 일반 채권과 구별하여 보호하는 기능까지는 수행하지 못함. 즉, 시스템상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대금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가압류·압류가 이루어지거나, 회생·파산 등 도산 절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보호 기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으나, 수급인의 부실, 금융사고, 도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구조임. 결과적으로 지급관리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오히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후퇴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마.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부재

-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하도급대금 관리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첫째,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또는 선금을 자체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공사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이는 하도급대금이 수급인의 일반 운영자금과 혼재되어 관리되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문제임.
 - 둘째, 계약금 및 선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이 미흡하여, 지급 이후 자금의 사용·흐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그 결과 선금이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재원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됨.
 - 셋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비용, 사용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영세 중소 건설업체의 시스템 이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함.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는 제도 접근 자체가 제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 넷째,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일된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주자별로 상이한 전자지급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여 주체 간 시스템 호환성이 저하되고, 중복 입력·이중 관리 등 행정적 비효율성이 누적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4.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규정 도입

가. 압류금지 방안의 정책적 배경

-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방안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 실질적으로 하수급인에게 귀속될 부분을 제3채권자의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제도임.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채권 집행으로 인한 지급 차단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로 이해됨.
-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압류금지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규정임. 하도급대금은 근

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채권과 달리, 사업자 간 거래 관계에서 형성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함. 따라서 임금 압류금지에 적용되는 논리를 하도급대금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한 무리를 내포하고 있음.

- 또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포괄적인 압류금지 규정이 도입될 경우, 하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는 수단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민법 제497조에 의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어 있고, 하도급법은 하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재하도급관계도 규율하므로, 수급사업자는 선급금반환채권·지체상금채권·하자보수비용채권 등(자동 채권)과 재하수급사업자(자재·장비업체 포함)의 재하도급대금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건설현장의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상 수급사업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됨. 이는 하수급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하수급인의 권리 행사 수단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제도의 설계에 있어 신중한 법리 검토가 요구됨.

나. 도산절차와 하도급대금 보호의 구조적 한계

- 수급인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됨. 이 경우 하도급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우선변제권이나 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하수급인은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변제 순위에 놓이게 되며, 실제 변제 가능성은 극히 제한될 수 있음.
- 이러한 법적 구조는, 지급보증이 면제된 상태에서 직접지급 합의가 제3자 집행이나 도산 절차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하고, 나아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역시 법적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중첩될 경우, 하수급인이 사실상 어떠한 실질적 보호 장치도 갖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함. 이는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가 정상적인 거래 국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위기 상황에 대한 구조적 대응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다. 제도 개선의 정책적 방향

- 직접지급 합의의 체결 여부 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직접지급이나 지급관리시스템은 지급 경로를 관리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수급인의 지급불능·도산 등 위기 상황에서 하수급인의 채권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기능까지 대체할 수는 없음.

-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의 일반 채권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보호 대상 채권으로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지급 방식이나 절차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하도급대금의 법적 지위를 구조적으로 재설계하지 않는 한, 제3자 압류·도산 절차 등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실질적 보호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식 처분권 제한 모델을 참고하여,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하도급대금 보호를 ‘지급 방식’이나 ‘지급 경로’의 문제가 아닌, 채권 귀속 및 처분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한 입법 모델임.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채권양도, 가압류·압류, 회생·파산 절차 전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효과가 발생함.

5. 영국의 PBA(Project Bank Account) 제도

가. 영국 PBA 개요

(1) PBA의 정의 및 기본 개념

- 영국의 Project Bank Account(PBA)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전용 계좌를 통해 수급인,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공사비·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 PBA는 단순한 대금지급 수단을 넘어,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지급·보호 제도로서, 신탁 상태(Trust status)의 용도 지정 계좌라는 법적 성격을 가짐.

- PBA의 핵심적 특징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 공급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임.
 - 이는 수급인을 경유하는 일방적·단계적 지급 구조에서 벗어나, 건설공사 공급망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대금 수령 권리를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임.
 - 특히, PBA는 신탁증서(Trust Deed)에 근거하여 운영됨으로써, 계좌에 적립된 공사대금이 수급인의 일반 재산이나 채권과 명확히 분리됨. 이에 따라 해당 대금은 제3자에 의한 가압류·압류나 도산 절차로부터 보호되며, 국내의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 압류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될 수 있음.

(2) PBA의 도입 배경

- 영국의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복합적이고 단계적인 대금지급 구조로 인해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Project Bank Account(PBA) 제도가 도입됨.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연쇄적 구조 하에서, 공급망의 하위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은 통상 3개월 이상의 장기 지급 지연을 감내해야 하거나, 상위 단계 기업의 부도·도산 시에는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특히,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전반의 연쇄 부실과 함께 그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됨. 이에 따라 2009년 Government Construction Board는 공공건설 부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금지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PBA 도입을 결정함.
 - 이후 2010년에는 영국정부(Cabinet Office)가 Procurement Information Note 2/2010을 통해 정부 조달 부서에 대해 PBA 사용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공공계약 승인 및 집행 절차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 PBA가 공공건설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해당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 특히 호주의 경우, 공공건설 부문에서 PB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재는 전체 공공건설 프로젝트의 80% 이상에 PBA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제도가 광범위하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됨.

〈표 2-7〉 글로벌 PBA 제도 도입 현황

| 지역 | 도입 연도 | 적용 기준 | 적용 현황 |
|---------|-------|--------------------|---------------|
| 북아일랜드 | 2013년 | £1 million 이상 | 공공공사 의무화 |
| 스코틀랜드 | 2016년 | £4 million 이상 | 모든 건설공사 의무 적용 |
| 웨일즈 | 2017년 | £2 million 이상 |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
| 호주 | 2017년 | AU\$2~5 million 이상 | 정부조달 건축/토목 |
| 영국 중앙정부 | 2019년 | 법안 발의 | 공공기관 의무화 방향 |

자료: UK CabinetOffice(2012), A guide to implementation of Project Bank Accounts(PBAs) in construction for clients.
Scottish Government(2025), Implementing project bank accounts in construction contracts.

나. PBA 운영 방식

(1) 다중승인모델 (Dual Authority/Joint Account Model)

- 다중승인모델(Dual Authority/Joint Account Model)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계좌의 공동 신탁자(Co-trustees)가 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구조임. 이 모델에서는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급 행위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동시 승인을 전제로 하여 집행됨.
- 다중승인모델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발주기관이 계좌 운영의 공동 책임자로 참여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 전반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음.
 - 둘째, 동일 발주기관이 다수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동일 금융기관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계좌 운영 및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셋째, 일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동계좌 개설 금지’ 규정을 형식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음.
- 반면, 다중승인모델은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음
 - 첫째, 공공기관 내부 규정상 공동계좌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중승인 구조 자체가 계좌 개설 단계에서부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둘째, 신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및 신탁 설정에 대한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초기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표 2-8〉 다중승인모델의 주요 특징

| 항 목 | 내 용 |
|--------|--------------------------|
| 계좌 개설 | 발주기관과 수급인 공동 명의 |
| 입금권자 | 발주기관만 입금 가능 |
| 지급승인 |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공동 승인 필수 |
| 신탁 관계 |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신탁 |
| 참여 절차 | 준수의무증서(Deed of Aderence) |
| 부족금 처리 |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 |

자료: UK CabinetOffice(2012), A guide to implementation of Project Bank Accounts(PBAs) in construction for clients. Actuate UK(2021), Project Bank Accounts Status & Opportunities.

(2) 단일승인모델 (Single Authority/Solo Account Model)

- 단일승인모델(Single Authority/Solo Account Model)은 수급인이 계좌의 유일한 신탁자(Sole trustee)가 되어 계좌를 관리하고, 발주기관은 지급 수준에 대한 제한적 통제만을 수행하는 구조임. 스코틀랜드 법제에서는 신탁법의 특성상 신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시되므로,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단일승인모델의 활용이 권장되고 있음.
- 단일승인모델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발주기관이 공동계좌의 명의자 또는 공동 신탁자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내부 규정상 공동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회피할 수 있음.
 - 둘째, 계좌의 신탁자가 수급인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신규 제도 도입 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및 신탁 설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음.
 - 셋째, 수급인이 필요 시 자체 자금을 신탁계좌에 추가 입금함으로써,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보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캐시 플로우 관리 측면에서 유연성이 확보됨.
- 반면, 단일승인모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첫째, 발주기관이 계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실

질적 통제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해 발주기관의 역할은 사후적 확인이나 모니터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큼.

- 둘째, 계좌 운영과 지급 승인 권한이 수급인에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력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요구됨.
- 셋째, 다수의 공사에서 각기 다른 신탁 은행이 활용될 경우, 발주기관 및 감독 주체의 입장에서는 계좌 관리 및 모니터링의 복잡성이 가중될 수 있음.

〈표 2-9〉 단일승인모델의 주요 특징

| 항 목 | 내 용 |
|--------|----------------------|
| 계좌 개설 | 수급인 단독 명의 |
| 입금권자 | 발주기관, 수급인 모두 입금 가능 |
| 지급승인 | 수급인 승인(발주기관은 모니터링) |
| 신탁 관계 | 수급인 단독 신탁 |
| 참여 절차 | 가입승인증서(Joining Deed) |
| 부족금 처리 | 수급인이 PBA에 추가 입금 가능 |

자료: UK CabinetOffice(2012), A guide to implementation of Project Bank Accounts(PBAs) in construction for clients. Actuate UK(2021), Project Bank Accounts Status & Opportunities.

다. PBA 운영 절차 및 주요 단계

(1) PBA 운영 절차

- Government Construction Board는 Project Bank Account(PBA)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계약 체결 이전 단계부터 공사 수행 및 지급 완료 이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법적·운영상 조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PBA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기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주요 제출 서류로는 계좌 신청양식, 은행계좌 계약에 대한 동의서, 신탁증서(Trust Deed), 은행 위임장(Bank Mandate), 인터넷뱅킹 이용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됨. 이러한 서류 준비 및 계좌 개설 절차에는 통상적으로 약 2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2-10〉 PBA 운영 절차

| 구 분 | | 상위 내용 | 하위 내용 |
|------|-----|--------------|---|
| 계약 전 | 1단계 | 일반사항 설명 및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PBA 상품이 영국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PBA 적용의 적절성 판단(공사 규모, 기간, 공급망 복잡도) 관계자들의 조직적 준비 상황 검토 |
| | 2단계 | 기초 문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증서(Trust Deed) 작성 다중승인모델의 경우: 준수 의무증서(Deed of Adherence) 단일승인모델의 경우: 가입승인증서(Joining Deed) 은행과의 위임장(Bank Mandate) 작성 |
| 계약절차 | 3단계 | 계약서 작성 및 동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BA 지급 방식에 대한 관계자 간 합의 수급인과 각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에 대한 동의 계약 문서에 PBA 관련 조항 삽입(예: JCT PBA 2024) |
| | 4단계 | 시스템 구성 및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BA 계좌 개설 (20일 이내 소요) 인터넷 뱅킹 접속 권한 설정 참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발주기관에의 모니터링 기능 및 관리 정보 제공 체계 확립 |
| 운영단계 | 5단계 | PBA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PBA에 대금 입금 PBA에 입금된 금액의 각 업체별 배분 지시 신탁증서 및 동의서에 따라 대금 지급 실행 실시간 모니터링 및 거래 기록 확인 대금지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1일 이내 업로드) |

자료: UK CabinetOffice(2012), A guide to implementation of Project Bank Accounts(PBAs) in construction for clients.
Actuate UK(2021), Project Bank Accounts Status & Opportunities.

(2) PBA 지급 프로세스

- PBA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은 사전에 설정된 신탁 구조와 승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로 운영됨.

〈표 2-11〉 PBA 지급 프로세스

| 구 분 | | 내 용 |
|-----|------|---------------------|
| 1단계 | 수급인 | 지급액 및 수혜자별 배분 정보 제출 |
| 2단계 | 발주기관 | 지급에 대한 기성 인증 |

| 구 분 | | 내 용 |
|-----|--------|----------------------------|
| 3단계 | 발주기관 | PBA에 총액 지급 |
| 4단계 | 다중승인모델 | 발주기관 + 수급인 승인 |
| | 단일승인모델 | 수급인 승인 (발주기관 모니터링) |
| 5단계 | 은행 | 각 수혜자(원·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동시 송금 |
| 6단계 | 수혜자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 제출(1일 이내) |

자료: UK CabinetOffice(2012), A guide to implementation of Project Bank Accounts(PBAs) in construction for clients.
Actuate UK(2021), Project Bank Accounts Status & Opportunities.

라. PBA의 주요 기능 및 이점

(1) 보호 기능

- PBA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신탁증서(Trust Deed)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제3자의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임.
 - PBA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된 이후에는 수급인의 일반 채권자가 해당 자금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시도하더라도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음. 다만, 신탁 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 관계나, 신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PBA는 신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과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함.
 - 이에 따라 신탁 은행(금융기관)이 부도에 이르는 경우에도, PBA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신탁회사의 일반 재산과 구별되어 보호되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됨.
 - 아울러 신탁 업무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과 관련 업계의 자율 규제 체계 하에서 수행되므로, 자금 운용과 지급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됨.

(2) 시간적 효율성

- PBA를 통한 동시 지급 구조가 적용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됨. 반면, PBA 도입 이전에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 재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연쇄적 지급 구조로 인해, 공급망 하위 단계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120일 이상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또한, PBA 운영 절차에서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1일 이내에 지급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업로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발주기관은 공사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해짐.

(3) 경제적 효과

- 영국 정부 추정에 따르면, Project Bank Account(PBA)가 적절히 설계·운영될 경우 공공 부문 건설 프로젝트에서 총 건설비의 최대 2.5%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금 회수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채무 추적 및 미수금 회수와 관련된 행정·법률 비용이 절감되며, 고금리의 단기 차입금 이용이 축소되는 데서 주로 발생함.
 - 아울러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간접 비용 역시 함께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PBA를 통해 공급망 하위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경우, 이들 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금융 비용 부담도 실질적으로 감소함. 이러한 효과는 자금 여력이 취약한 영세·중소 하도급 기업일수록 더욱 크게 체감되는 효과로 평가되며, PBA가 단순한 지급 제도를 넘어 건설산업 전반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함.

(4) 신뢰 및 투명성 강화

- PBA는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인 “공정하고 신속한 결제(Fair and Prompt Payment)”를 제도적으로 구현·의무화하는 장치임. 모든 공급망 구성원이 동일한 기준과 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설계됨으로써, 지급 시기·순서에 따른 상대적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차단됨

- 발주기관이 PBA를 통해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투명성은 행정 감사를 용이하게 하고,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대금 지급은 계약 당사자 간 만족도를 높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 아울러 PBA를 통해 축적되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급 기록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기능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함.

마. PBA 법률적 구조 및 효력

- PBA는 영국 신탁법(English Trust Law) 및 스코틀랜드 신탁법(Scots Trust Law)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그 법적 유효성은 신탁증서(Trust Deed)에 의해 명확히 입증됨. 이를 통해 PBA 계좌에 적립된 공사대금은 신탁재산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일반 채권과 구별되는 법적 효과를 창출함.
 - PBA 계좌의 자금은 신탁재산(trust asset)으로 분류되어 수급인의 일반 자산과 법적으로 분리됨. 이는 국내 신탁법 제24조의 분별관리 원칙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영국의 경우 관례법과 확립된 신탁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과 신탁회사(또는 수급인)의 고유재산이 철저히 분리되어 관리됨.
 - 영국 중앙정부는 ‘2010년 조달 정보 노트(2010 Procurement Information Note)’를 통해 정부 조달 부서 전반에 PBA 사용을 권고한 이후, 2012년 ‘정부 건설 위원회(Government Construction Board) 가이드라인’을 통해 PBA 운영에 관한 최소 요구 기준을 정립함. 나아가 2019년에는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PBA 사용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진함.
 - 스코틀랜드의 경우, 신탁법 체계의 특성상 이중승인(다중승인) 모델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특히, 스코틀랜드 공공재무 매뉴얼(Scottish Public Finance Manual, SPFM)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은 4백만 파운드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PBA 사용을 법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 웨일즈의 경우에는 웨일즈 조달 정책 노트(Welsh Procurement Policy Note,

WPPN)를 통해 2백만 파운드 이상의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서 PBA 사용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설득력 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되, 그 사유에 대하여 서면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바. 신탁 구조의 법적 의미

(1) 신탁자(Trustee)의 역할

- PBA에서 신탁자는 일반적으로 발주기관 및 수급인으로 구성되며, 신탁재산인 PBA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함. 신탁자는 신탁증서(Trust Deed)에 규정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처리할 의무를 짐.
- 구체적으로 신탁자는 자산의 임의 유용, 신탁 목적에 반하는 지급, 승인되지 않은 자금 집행 등 부정 사용을 금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재산의 보전과 투명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이러한 신탁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신탁자는 법원에 의해 신탁 위반(breach of trust)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또는 신탁 관계의 시정 등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수혜자(beneficiary)의 지위

- PBA의 수혜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급인(General Contractor), 각 단계의 하수급인(Subcontractors), 재하수급인(Sub-subcontractors), 근로자(Workers), 자재·장비 공급업체 등 공사 수행에 참여하는 공급망 전반의 주체를 포괄함.
- 이들 수혜자는 신탁증서(Trust Deed), 준수의무증서(Deed of Adherence), 공동증서(Joint Deed) 등에 서명함으로써, PBA 신탁 구조 내에서 공사대금 또는 노무비 등에 대한 직접적 보호 권리를 취득하게 됨. 이에 따라 각 수혜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자신의 귀속분에 관하여, 지급 지연·미지급, 제3자 집행, 도산 위험 등으로부터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됨.

(3) 신탁 목적의 법적 제약

- 신탁증서(Trust Deed)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PBA 계좌의 자금은 계약상 정해진 공사비, 노무비 등 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금의 지급, 그리고 신탁증서에 등재된 수혜자에 대한 정당한 지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PBA 자금은 수급인 또는 제3자의 부채 상환, 다른 프로젝트로의 전용, 기타 신탁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백히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신탁 목적 위반으로 평가됨.

사. PBA에 대한 압류 불가능성

- PBA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효력은 신탁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임. 이는 PBA가 단순한 지급 계좌가 아니라, 신탁법에 따른 독립된 재산 영역으로 설정된 데에서 비롯됨.
 - PBA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신탁증서(Trust Deed)에 명시된 목적, 즉 계약상 정해진 공사비·노무비 등의 지급 및 신탁증서에 등재된 수혜자에 대한 정당한 지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부채 상환, 다른 프로젝트로의 전용, 기타 신탁 목적 외의 용도는 명백히 금지됨.
 - 신탁자산은 신탁자 개인 또는 수급인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법인격은 없으나 독립된 신탁 관계의 객체로 존재함. 이에 따라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PBA의 신탁자산에는 미치지 않음.
 - 또한, PBA는 공공발주기관의 자금이 직접 입금·관리되는 계좌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경우에 따라 공공자금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결합될 수 있음. 특히 정부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입금된 자금을 국가 또는 공공의 자산으로 취급함으로써 별도의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할 여지도 존재함.
 - 다만, 이러한 보호 효과는 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된 이후에 발생한 권리 관계에 한하여 적용됨. 신탁 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권리나,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기초한 권리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 범위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함.

아. 영국 PBA 제도의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

(1) 현행 국내 대금지급시스템의 한계점

- 국내에서 운영 중인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예: 하도급지킴이 등)은 기성금의 직접 지급 및 지급 경로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가압류·압류 및 도산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예치계좌나 특수계좌(e계정)는 수급인의 부도·파산 시에도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려는 운영상 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는 신탁법에 근거한 명확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님.
-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급인의 기성금 채권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 발생하는 경우, 노무자 및 자재·장비 공급업체에 대한 직불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함.
 - 둘째, 가압류 또는 압류가 개입된 이후에는 지급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법률 검토 및 분쟁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 셋째,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와 함께 부당한 위탁취소 논란이 발생하는 등, 하수급인의 법적·재정적 위험이 확대되는 구조가 반복됨.
- 이러한 한계는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이 지급 절차의 관리에는 유효하나, 하도급대금의 법적 지위를 수급인의 일반 채권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구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제도 개선에 있어 기술적 관리 수단을 넘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줌.

(2) 영국 PBA 제도 분석

- 영국 PBA제도는 신탁법(Trust Law)에 명시된 명확한 법적 근거에 있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나 계약상 약정에 의존하는 방식과 달리, 법률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강행적

효력을 수반함.

- 신탁법이 부여하는 핵심 효력은 ① 신탁자산의 완전한 법적 분리, ② 신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원칙적 불가능성, ③ 신탁자의 권한·의무 및 책임의 명확화, ④ 신탁 의무 위반 시 법원의 판결을 통한 실효적 구제 및 책임 추궁 가능성 등에 있음.

○ PBA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효력은 신탁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임. 이는 PBA가 단순한 지급 계좌가 아니라, 신탁법에 따른 독립된 재산 영역으로 설정된 데에서 비롯됨.

- PBA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신탁증서(Trust Deed)에 명시된 목적, 즉 계약상 정해진 공사비·노무비 등의 지급 및 신탁증서에 등재된 수혜자에 대한 정당한 지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부채 상환, 다른 프로젝트로의 전용, 기타 신탁 목적 외의 용도는 명백히 금지됨.
- 신탁자산은 신탁자 개인 또는 수급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법인격은 없으나 독립된 신탁 관계의 객체로 존재함. 이에 따라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PBA의 신탁자산에는 미치지 않음.
- 또한, PBA는 공공발주기관의 자금이 직접 입금·관리되는 계좌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경우에 따라 공공자금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결합될 수 있음. 특히 정부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입금된 자금을 국가 또는 공공의 자산으로 취급함으로써 별도의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할 여지도 존재함.
- 다만, 이러한 보호 효과는 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된 이후에 발생한 권리 관계에 한하여 적용됨. 신탁 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권리나,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기초한 권리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 범위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함.

○ PBA는 1차 하도급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다계층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보호 대상으로 포괄하도록 설계된 제도임.

- 이를 위해 신탁증서를 통해 각 단계의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재·장비 공급업체까지 신탁의 수혜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귀속분에 대하여 신탁법에 기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됨.

6. 소결

- 영국의 Project Bank Account(PBA) 제도는 단순한 대금지급 시스템을 넘어, 신탁법에 기반한 법적 강제력과 다계층 공급망 보호 구조를 결합한 포괄적 제도로 평가됨.
 - 특히 압류로부터의 구조적 보호, 신속한 대금 지급, 지급 과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최대 2.5%에 달하는 건설비 절감 효과는, 한국 건설산업이 장기간 직면해 온 임금 체불 및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음.
- PBA 도입을 위해서는 신탁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공사대금채권신탁과 예금신탁의 병행 운영에 대한 제도 설계, 정부 주도의 운영·감독 체계 구축,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금융기관 선정, 그리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전제로 한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함.
- 이러한 제도적·운영상 준비가 충실히 이행될 경우, PBA 제도는 국내 건설산업에 정착하여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Ⅲ. 채권신탁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개선방안

1.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의 필요성

가.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의 구조와 특징

-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수급인을 정점으로 하여,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연쇄적 계약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하수급인은 다시 근로계약 및 자재·장비 구매계약에 따라 재하수급인에게 노무비·자재비·장비대 등을 지급하는 방식임.
-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하도급대금은 통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 계좌를 통해 관리되며, 공사대금이 기업의 운영자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자금 등과 동일한 자금 흐름 속에서 혼재되어 운용되는 특징을 가짐. 즉, 하도급대금은 특정 공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과 구별되지 않은 채 동일한 지위에서 관리되고 있음.
- 이러한 지급체계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거나 외부 채무 관계가 개입되는 경우, 그 구조적 취약성이 즉각적으로 노출됨.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제3자에 의한 압류·가압류, 도산 절차 등에 노출되며, 공사 수행 주체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대금 회수 위험이 급격히 증대되는 문제가 발생함.

나. 수급인 부도 발생 시 지급체계의 연쇄 붕괴

-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급인에게 부도 또는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금 지급 구조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된다는 점임. 이는 하도급대금이 수급인의 일반 자산과 분리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함.

- 수급인이 자금 부족, 과도한 채무 부담,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부도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법적·실무적 제약으로 인해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이로 인해 공사대금은 더 이상 하도급대금의 지급 재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인의 다른 채무와 결합되어 제3자에 의한 압류·가압류·체납처분 등의 대상이 되며, 당초 공사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이 외부 채권자의 채권 회수 수단으로 전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그 결과,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곧바로 근로자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 등의 체불로 이어지게 됨. 이는 단일 기업의 부실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연쇄적 지급 붕괴 현상을 초래함.

다. 공사 진행 리스크의 확대와 사업 차질

- 하도급대금 지급의 불안정성은 단순한 금전 지급 문제를 넘어, 공사 진행 자체의 리스크를 급격히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수급인의 부도 또는 지급정지는 공사 중단, 숙련 인력의 이탈, 장비 철수 등으로 직결되며, 발주자는 불가피하게 대체 수급인을 긴급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이 과정에서 대체 업체 선정 및 투입 과정의 지연으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추가 공사비 부담과 함께 시공 품질 저하 가능성도 동시에 확대됨.
 - 특히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위험, 추가 민원 발생 등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의 비용 부담과 행정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임.
 - 즉, 하도급대금 지급 불안은 하수급인 보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수급인과 발주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기능함.

라. 행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

-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에서는 지급 불안이 현실화되는 경우, 발주자의 관리·행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수급인 부도 이후에는 체불 임금 문제,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민원 제기,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중재 요청 등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

- 이로 인해 발주자는 사회적 책임과 공사 지속성 확보를 이유로 임시 자금 투입이나 대위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기업 회생 절차 개입, 채권자 간 분쟁,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한 행정적·사법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작동함.

마. 기존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

- 현행 하도급대금 보호 정책은 지급 지연 또는 체불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중점을 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 등은 일정 수준의 억지력은 갖추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하수급인의 경영 피해와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함.
 - 특히 부도 상황에서는 법적 구제 수단이 실질적인 자금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고, 소송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사후 규제 중심 접근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음

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 규제 및 분쟁 해결 중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급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지급 지연이나 체불 발생 이후의 제재와 구제 수단만으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 운영자금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해당 자금이 수급인의 부도, 재무 악화 또는 제3자의 채권 집행과 무관하게 공사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하수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즉, 하도급대금은 단순한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공사 수행이라는 특정 목적을 전제로 발생한 목적성 자금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문제는 개별 사업자의 도덕성이나 사후 규제의 강도 문제를 넘어, 자금의 귀속과 보호 방식을 재설계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함.

2. 채권신탁 제도의 법적 근거

가. 신탁제도의 개요

- 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인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전제로,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해당 재산권을 관리·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함. 즉, 신탁은 재산의 소유, 관리·처분, 수익의 귀속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제도임.
 - 신탁관계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수탁자·수익자라는 세 주체로 구성됨. 위탁자는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주체이며, 수탁자는 해당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처분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임. 수익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서, 신탁제도의 궁극적인 보호 대상임.
 -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달리,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일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한 재산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특히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과도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신탁제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임.
- 채권신탁은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신탁재산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위탁자(수급인)의 일반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하는 제도임. 이는 수급인의 부도, 회생, 파산 또는 제3자의 강제집행 등 외부 리스크로부터 특정 목적 자금을 보호하는 도산절연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 수단임.
 - 신탁법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위탁자(수급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신탁재산이라는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게 됨. 채권신탁은 단순한 지급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로서 의미를 가짐.
 - 이에 따라 수급인이 경영 위기로 파산하거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이미 신탁된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의 파산재단이나 회생절차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신탁사를 통해 기성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됨.

나. 법적 근거

-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의 일반 채권자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소유권이 이미 신탁사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음. 이는 신탁 설정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이 위탁자의 재산 범위를 이탈하기 때문임.
 - 일반적인 직접지급 합의 체제에서는, 발주자에게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는지, 또는 하수급인의 직불 요청이 먼저 도달하였는지에 따라 우선권이 결정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지급 순위와 효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분쟁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 반면, 신탁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효과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이에 따른 강제 집행 금지에 있음.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재산이 아닌 독립된 법적 성격의 재산으로 취급됨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된 재산은, 설령 위탁자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도산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직접적인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음. 즉,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무 상태와 분리되어 보호되는 구조를 형성함.
 - 공사대금 채권이 신탁을 통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더 이상 수급인의 일반 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급인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이로 인해 신탁제도는 공사대금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발생한 자금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기능함.

〈표 3-1〉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및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分別관리의무)」에 따라, 수탁자는 수익자인 하수급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 이에 반하여 수탁자가 수급인의 지시나 이해관계에 따라 신탁 목적에 반하는 자금 집행을 하는 경우, 이는 신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신탁이 설정되면 위탁자는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됨. 이 과정에서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않음.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수익자의 이익과 신탁 목적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신탁재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음. 특히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 계좌와 명확히 구분된 신탁 전용 계정에서 관리되며, 이는 자금의 유용이나 혼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함.
-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집행됨. 이 과정에서 위탁자는 직접적인 자금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는 신탁제도가 단순한 예치나 보관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임.
- 특히, 공사대금은 오직 신탁사가 관리하는 특정 신탁계좌로만 입금되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에 편입시켜 다른 현장의 급여 지급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행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짐. 이는 하도급대금의 목적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효과를 가짐.

〈표 3-2〉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 ①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신탁제도는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급 불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음. 이는 분쟁 발생 이후의 구제에 의존하는 기존 접근 방식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점임.

- 특히 강제집행 금지와 도산절연이라는 신탁법상의 핵심 법적 효과는, 건설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하도급대금 지급 불안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함. 이러한 효과는 개별 사업자의 재무 상태나 외부 채권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의 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
-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신탁을 단순한 금융상품이나 보조적 지급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공사대금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인프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공사대금의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수급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채권신탁 구조와 하도급대금 보호 메커니즘

가. 채권신탁의 도입배경 및 개념

- 채권신탁은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체계가 지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고 이를 신탁계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목적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임.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금의 귀속과 관리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사전적 보호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짐.
 -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체계에서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 재산과 공사대금이 동일한 계좌 내에서 혼재되어 관리됨에 따라, 특정 주체의 부도·체납·채권 집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이 외부 채권자에게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사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자금이 본래의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채권신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인·하수급인·재하수급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신탁 구조 내에서 재정렬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목적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지급 안정성과 거래 질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채권신탁의 기본 구조

- 채권신탁의 기본 구조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자재·장비·노무 제공자), 그리고 신탁사로 구성됨. 이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급인과

신탁사이며, 공사대금 지급의 흐름은 기존의 수급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신탁계좌를 중심으로 재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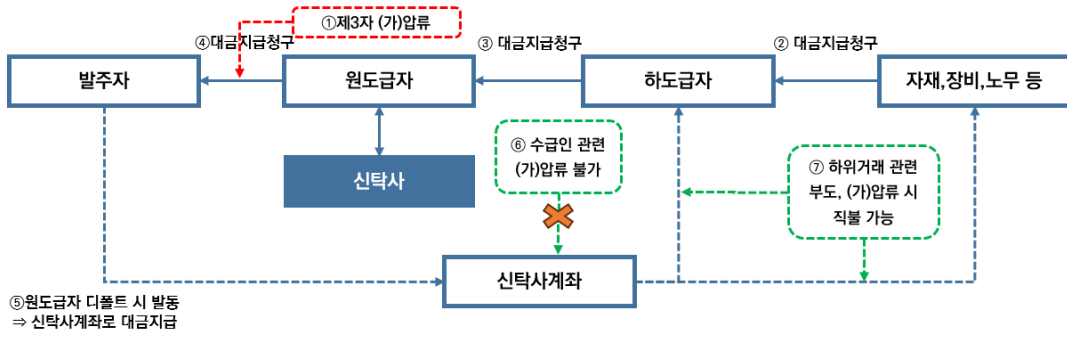
- 먼저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수령하게 될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사에 신탁함. 이를 통해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의 일반 재산에서 분리되어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며, 제3자의 채권 집행이나 도산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함.
- 신탁사는 신탁된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신탁계좌를 개설·관리하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함. 이 과정에서 신탁사는 신탁 목적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금을 집행할 법적 책임을 부담함.
-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인 또는 상위 하수급인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되, 대금 지급의 실제 집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조임. 이를 통해 계약 구조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자금 흐름만을 신탁 구조로 분리·관리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다. 채권신탁의 단계별 자금 및 채권 흐름

-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되, 실제 지급은 신탁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를 취함. 이는 수급인이 도산하거나 체납 상태에 이르더라도, 발주자의 지급 행위 자체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임.
 -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사에 신탁함으로써, 해당 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권을 상실하게 됨.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일반 채권자 등 제3자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없음.
 - 신탁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하수급인에게 부도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하수급인의 일반 채무와 결합되지 않고 신탁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됨.
 - 재하수급인에 대해서는 하수급인과의 하위 거래 관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되, 하수급인에게 부도·가압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 구조에 따라 직불 방식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이를 통해 최종 노무비·자재비 지급의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됨.

○ 채권신탁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핵심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제거함. 다음은 채권신탁에 따른 자금 및 채권 흐름의 단계별 예시임.

- ① 제3자 가압류 위협의 전제: 수급인은 금융기관 또는 일반 채권자 등 제3자로부터 채권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수급인이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어 하도급대금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함. 채권신탁 구조는 이러한 가압류 리스크를 전제로 설계됨.
- ②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청구: 하수급인은 공사 수행 결과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함. 이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 단계임.
- ③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기성 및 공사 수행 내역을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이 시점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함.
- ④ 발주자의 지급 의무 확정: 발주자는 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다만, 실제 지급 방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정됨.
- ⑤ 수급인 관련 가압류의 차단: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사에 신탁함에 따라, 해당 채권은 신탁재산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제3자의 가압류·압류·강제집행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음. 즉, 수급인 개인의 채무 문제로부터 공사대금이 보호됨.
- ⑥ 수급인 디폴트 발생 시 지급 구조 전환: 수급인이 부도, 회생, 지급불능 등 디폴트 상태에 이르는 경우, 기존의 수급인 경유 지급 경로는 차단되고, 발주자는 신탁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 이를 통해 수급인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 흐름이 유지됨.
- ⑦ 하위 거래 단계의 보호 및 직불 가능성: 하수급인에게 부도·가압류·체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탁 구조에 따라 재하수급인(자재·장비·노무 제공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 이를 통해 최종 근로자 및 공급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예방함.



[그림 3-1] 채권신탁의 구조 및 채권 흐름

자료: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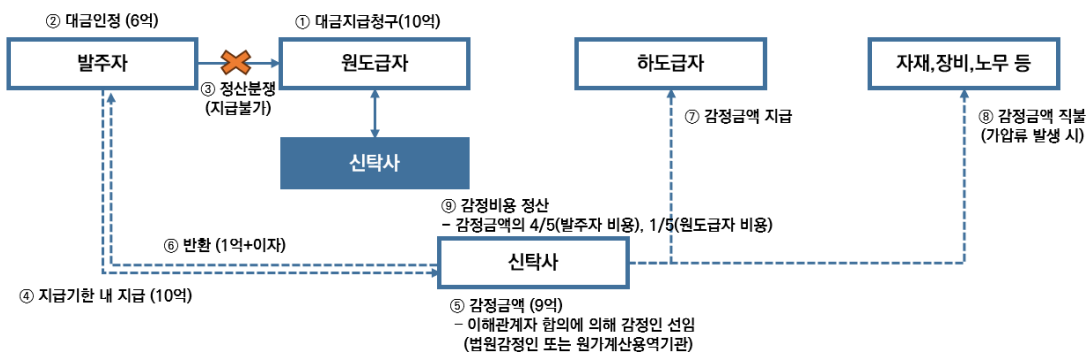
라. 채권신탁 정산감정의 단계별 절차

○ 채권신탁은 정산감정에 대한 단계별 절차를 제도적으로 내장함으로써,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다음은 채권신탁을 활용한 정산감정 절차의 단계별 흐름에 대한 예시임.

- ① 공사대금 지급 청구: 수급인은 공사 수행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10억 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함. 이는 계약에 근거한 정상적인 기성 또는 준공 대금 청구 단계로서, 이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절차임.
- ②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 발주자는 공사 진행 상황, 정산 범위에 대한 이견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예: 6억 원)에 대한 지급을 유보함. 이 단계에서 공사대금 전액이 즉시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지급 불확실성이 발생함.
- ③ 자율 정산의 불가: 수급인과 발주자 간에 공사 기성률, 잔여 공사의 가치, 책임 귀속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정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됨. 이로 인해 기존의 계약 기반 정산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
- ④ 공사대금 채권의 신탁 설정: 수급인은 분쟁 중인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사에 신탁함. 이를 통해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의 일반 재산에서 분리되어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며, 이후 공사대금은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됨. 이 단계부터 공사대금은 제3자의 가압류·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함.
- ⑤ 감정인 선임: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신탁사는 사전에 체결된 정산감정 합의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정인(법원감정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선임함. 감정인은 공사 진행률, 시공 내역, 투입된 자재·노무·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대금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권한을 가짐.

- ⑥ 감정에 따른 감정수수료 정산 구조 확정: 감정인은 공사대금의 적정 금액을 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정수수료 배분 구조를 확정함. 예를 들어 감정수수료는 감정 금액(예: 수급인이 10억 청구, 발주자는 6억 인정, 감정 금액 9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예: 3/4)은 발주자 부담 비용으로, 나머지 1/4은 수급인 부담 비용으로 구분하여 책임을 배분함. 이는 계약 종료 또는 분쟁 상황에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임.
- ⑦ 하도급대금의 신탁계좌를 통한 직접 지급: 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를 통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됨. 이 단계에서는 수급인의 자금 상태, 부도 여부와 무관하게 신탁재산을 기반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짐.
- ⑧ 하위 공급망에 대한 직접 지급 가능성: 하수급인에게 가압류, 체납,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탁 구조에 따라 재하수급인(자재·장비·노무 제공자)에게 감정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 이를 통해 최종 근로자 및 공급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예방함.
- ⑨ 감정 금액보다 초과 입금된 금액의 반환: 정산감정 절차 종료 전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금액(예: 6억)을 초과하여 수급인의 청구금액(예: 10억) 전액을 신탁계좌로 입금한 후 감정 금액(예: 9억)보다 초과 입금된 금액(예: 1억) 및 이자를 발주자에게 반환함. 그 반환 금액에는 지급 유보 기간 동안 신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음.
- ⑩ 지급 절차의 종결: 최종적으로 정산감정 절차가 완료되면, 발주자는 지급기한 내에 확정된 감정 금액을 신탁계좌로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함. 이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종결되며, 채권신탁에 기반한 정산·지급 절차가 완결됨.



[그림 3-2] 채권신탁의 정산감정의 단계별 절차

자료: 저자작성

마.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체계와의 구조적 차별성

-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 채권과 동일한 지위에서 관리함으로써, 지급 안정성이 개별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반면, 채권신탁은 공사대금을 목적성 자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급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함.
 - 채권신탁은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에 내재된 근본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임. 공사대금의 흐름을 신탁 구조를 통해 재설계함으로써,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부도·압류·체납 등 외부 리스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존 제도들이 지급 지연 또는 체불 발생 이후의 분쟁 해결이나 행정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채권신탁은 지급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짐.
 - 이러한 구조는 하수급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수급인의 공사 수행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제공함.
- 나아가 채권신탁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하수급인은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 중단이나 민원 발생과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음.
 - 발주자 역시 공사 지연, 분쟁,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
 - 궁극적으로 채권신탁은 하도급대금 문제를 개별 기업의 책임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의미함.

4.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 하도급대금 채권신탁 제도를 건설산업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단순한 금융기법이 아닌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독자적 법적 제도로 명확히 위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이나 계약 관행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제도적 지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직접지급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수급인의 일반 재산과 혼재되어 관리되는 구조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급인의 부도·회생·압류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이 구조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 방식의 보완이나 사후적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사대금의 법적 귀속과 관리 구조를 재설계하는 입법적 접근이 요구됨.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방안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 지급’의 요건에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개선 사항임.
 -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사대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 이를 법률상 ‘현금 지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신탁제도의 도입을 주저하게 되거나, 신탁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현금 지급 요건에 신탁계약에 따른 입금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입금 자체를 현금 지급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개정은 신탁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관리가 단순한 지급 방식의 변형이나 예외적 처리 수단이 아니라, 법률상 현금 지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정식 이행 방식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가짐. 나아가 신탁제도 활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

소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신탁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음.

〈표 3-3〉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추가 관련 법령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 기존 조항 | 신규 조항 |
|--|--|
| <p>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p>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p>②~⑨ (생략)</p> | <p>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p>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p>②~⑨ (기존 조문)</p> <p>⑩ 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설정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하여야 한다.</p> <p>⑪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공사대금 채권신탁 제도의 의무 대상, 적용 범위 및 도입 절차를 법령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신탁제도가 선언적·임의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설계임.
 - 그간 공사대금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적용 대상과 범위, 도입 절차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음. 이에 따라 공사 규모, 계약 유형, 원·하도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대금 채권신탁의 의무 적용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제34조의3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신탁의 설정 시기 및 기간, 신탁 대상이 되는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신탁계좌 운영의 기본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이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제도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행정적·금융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됨.
 - 특히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절차 규정은 신탁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과 실무 혼선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짐.

- 아울러 발주자에게 계약서에 공사대금 채권신탁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계약 당사자가 신탁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탁 설정 여부, 신탁계좌 활용 방식, 공사대금 지급 흐름이 명확히 공유될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은 공사대금 회수 구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확실성에 기인한 거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표 3-4〉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추가 관련 법령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 기존 조항 | 신규 조항 |
|---------------------------------|---|
| 제34조의3(공사대금 채권신탁의 설정 등) (없음) | <p>제34조의3(공사대금 채권신탁의 설정 등)(신설)</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규모, 공공성, 하도급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신탁의 설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신탁은 신탁법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는 수급인과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대금 채권신탁의 설정 여부 2. 신탁범위(신탁기간 및 신탁대상) 3. 수탁자 및 수익자의 지정 및 신탁사 선정 기준 4. 신탁보수 및 비용 배분 5. 신탁계좌의 특징 <p>④ 수탁자는 신탁계약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하수급인 등에게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자재비·장비대 등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신탁의 단계적 도입 일정표, 적용 대상 공사의 규모·유형, 신탁계약 표준안 등을 정할 수 있다.</p> |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34조의4를 신설하여 신탁법상 핵심 규정의 법적 효과를 건설공사대금 지급 구조 속에서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신탁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조치임.
 - 신탁법 제22조, 제27조, 제37조는 각각 신탁재산의 독립성, 강제집행의 제한, 수탁자의 관리·처분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나, 이를 건설공사대금 채권에 적용하는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음.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효과를 명시적으로 재확인할 필요성이 큼.

- 신탁법상의 법적 효과를 건설공사 대금 지급 맥락에서 재확인함으로써, 신탁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신탁법 제22조에 따른 강제집행 등 금지 원리는, 공사대금 채권이 신탁재산으로 이전되는 즉시 해당 채권이 수급인의 일반 채권자 또는 제3자의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함.
 - 제27조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 분별관리 원칙은, 공사대금이 수급인의 고유재산이나 운영자금과 명확히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 제37조에 따른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책임 규정은, 신탁사가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단순한 금융업무가 아니라 법률상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성실히 운영할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함.
 - 수탁자 등(대금지급시스템 운영사 포함)이 하수급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임의로 신탁계좌(하수급인의 대금지급시스템 계좌 포함)에 입금되는 하도급대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신탁보수(대금지급시스템 보수 포함) 등으로 수취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4를 통해 신탁재산의 도산절연 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신탁의 핵심 보호 기능을 법률에 분명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수급인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신탁재산에 귀속된 공사대금은 도산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임.
 - 이러한 명시적 규정은 제도에 대한 법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표 3-5〉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추가 관련 법령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 기존 조항 | 신규 조항 |
|---|---|
| <p>제34조의4(신탁재산의 보호) (없음)</p> | <p>제34조의4(신탁재산의 보호)(신설)</p> <p>① 공사대금 채권신탁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공사대금 채권 및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금전 기타 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은 수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된 독립된 재산으로 본다.</p> <p>②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p> <p>③ 수급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그 밖의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급인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p> <p>④ 수탁자는 신탁법 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탁자 등이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운용내지 유용함으로써</p> |

| 기존 조항 | 신규 조항 |
|-------|--|
| | <p>하수급인 등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⑤ 신탁재산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보호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p> |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개정하여 발주자의 신탁계좌 입금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사대금 지급 구조 전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조치임.

- 현행 제도하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하도급 단계에서 대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위험과 부담이 하수급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사대금이 지급의 최초 단계부터 법적으로 보호된 경로를 따라 유통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발주자가 신탁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경우 이를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의 적법한 이행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규정은, 발주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신탁계좌 입금이 현금 지급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될 경우, 발주자는 이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도산 또는 하도급 단계에서의 분쟁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지급 의무를 완결적으로 이행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음.
- 이는 발주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법적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신탁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함.

〈표 3-6〉 신탁계좌를 통한 직접 지급의무 추가 관련 법령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 기존 조항 | 신규 조항 |
|--|---|
| <p>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p> <p>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는 그 지급 범위에서 소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인이 파산·부도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 <p>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p> <p>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는 그 지급 범위에서 소멸한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인이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기존 조항 | 신규 조항 |
|--|--|
| <p>3. 그 밖의 하수급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③~⑦ (생략)</p> | <p>2.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p> <p>3. 그 밖의 하수급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p> <p>1~6. (기존 조문 유지)</p> <p>③~⑦ (기존 조문 유지)</p> |

III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제13조의4를 신설하여 공사대금 채권신탁과 관련된 규율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조치임.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는 공정거래 정책의 핵심 과제였으나, 그간 신탁계약이라는 민사적·금융적 수단과 공정거래 법제 간의 연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해 왔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 당국이 추구해 온 하도급대금 보호의 입법 취지를 공사대금 채권신탁 계약의 내용에 직접 반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제13조의4」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하도급대금의 우선 지급 원칙, 지급 시기 준수 의무, 임의적 지급 변경의 제한 등 공정거래상 보호 원칙이 반영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는 신탁계약이 단순한 당사자 간 사적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함께 수행하는 제도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짐.
 - 이를 통해 신탁계약의 내용이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와 괴리되거나, 하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아울러 수탁자에게 신탁계약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장치임.
 - 수탁자가 신탁계좌의 잔액, 지급 내역, 향후 지급 예정 사항 등을 일정 주기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

대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 이는 하수급인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금 체불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를 갖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대금 채권신탁과 관련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탁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준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표준약관을 통해 신탁계약의 핵심 조항을 사전에 제시할 경우, 개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의 삽입이나 편의적·자의적 설계를 예방할 수 있음.
- 이는 신탁제도가 하도급대금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기능함.

〈표 3-7〉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추가 관련 법령 개정안 (하도급법)

| 기존 조항 | 신규 조항 |
|--------------------------------|---|
| 제13조의4(공사대금 채권신탁과의 연계) (없음) | <p>제13조의4(공사대금 채권신탁과의 연계)(신설)</p> <p>① 원사업자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항 2.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 3. 하도급대금 정산 분쟁 발생 시 정산감정 절차 4.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 <p>② 수탁자는 이 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통한 하도급대금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계약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수 있다.</p> <p>④ 신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이 법 제32조의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p>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법적 충돌과 해석상 혼선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조치임.

-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급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수급인의 일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자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왔음. 이는 하도급대금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이에 따라 제14조의2에서는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의 법적 효과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규정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직접지급 제도가 제3자 압류·가압류 등 외부 집행으로 인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사대금 채권이 신탁재산으로 이전되는 경우,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은 수급인의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도산절연 및 집행 차단 효과를 직접지급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음.

○ 또한, 신탁이 설정된 경우 발주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접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장치임.

- 기존의 직접지급 제도는 수급인의 부도·회생·파산 등이나, 수급인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채권 (가)압류 등에 의하여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직접 지급 지연이나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중립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이는 신탁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짐.
- 나아가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직접지급의 우선성, 제3자 압류 배제, 지급 절차의 신속성 등 명확한 법적 효과가 일관되게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신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표 3-8〉 신탁계좌를 통한 직접 지급의무 추가 관련 법령 개정안 (하도급법)

| 기존 조항 | 신규 조항 |
|--------------------------------------|---|
| 제14조의2(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있는 경우의 특례) (없음) | 제14조의2(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있는 경우의 특례)(신설) ① 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신탁계좌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채권신탁이 설정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IV. 결 론

-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및 지급보증 제도가 제3자 압류·가압류, 도산 절차, 복잡한 계약 구조 등 현실적인 위험 요인 앞에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함.
- 현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압류가 선행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판례와 실무에 따르면,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 시점과 압류의 선후 관계에 따라 하수급인의 권리가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하도급대금 보호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지급보증 제도 역시 직접지급 합의 또는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의 활용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면제되면서,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하수급인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하도급대금 보호 문제를 개별 지급 방식의 보완 차원이 아닌, 채권의 법적 귀속과 보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함.
 -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할 경우,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은 수급인의 고유재산 및 일반 채권자와 분리되어 관리되며, 강제집행·가압류·도산 절차로부터 보호되는 도산절연 효과가 발생함.
 - 이는 기존 직접지급제도나 지급관리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사전적·구조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가짐.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러한 신탁제도의 법적 효과를 건설공사 대금지급 구조에 체계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신탁계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발주자·수급인·수탁자·하수급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도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4조의3, 제34조의4 개정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신탁의 설정 요건, 절차, 법적 효과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특히 신탁계약에 따른 입금을 현금 지급으로 인정하고, 발주자의 신탁계좌를 통한 직접 지급 의무를 명시하며, 신탁재산의 도산절연 원리를 건설공사 맥락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하도급법 제13조의4 신설을 통해 공정거래 당국의 하도급대금 보호 취지가 신탁계약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탁계약의 내용과 운영이 공정거래법적 통제하에 놓이도록 해야 함.
 - 또한, 하도급법 제14조의2 신설을 통해 기존의 ‘직접지급 합의와 제3자 압류 간 우선순위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신탁 설정 시 직접지급이 제도적으로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합적인 법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제도 개선 방안은 하도급대금 문제를 개별 사업자의 책임이나 사후적 분쟁 해결의 문제에서 벗어나,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이는 건설산업의 공정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박승국, 선임연구위원(skpark@ricon.re.kr)

참고문헌

건설산업정보센터(2021), 민간현장 체불방지 강화방안 연구.

김순태(2020), 건설 하도급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순태(202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및 하도급법 위반 개선 방안: 상생채권신탁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건설법무학회, 건설법무, 7(1), pp.109-137.

손승호(2025),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하도급법연구, 1(2), pp.59-86.

전문건설협회(2024),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보고서

전용암·신만중(2020), 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수급인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공공사 회학회, 10(3), pp.73-98.

Actuate UK(2021), Project Bank Accounts Status & Opportunities.

Rachel Griffiths·Wayne Lord·Jeremy Coggins(2017), Project bank accounts: the second wave of security of payment?,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of Property and Construction, 22(3), pp.322-338.

Scottish Government(2025), Implementing project bank accounts in construction contracts.

UK CabinetOffice(2012), A guide to implementation of Project Bank Accounts(PBAs) in construction for clients.

건설공사 대금의 채권신탁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방안

2026년 4월 인쇄

2026년 4월 발행

발행인 김희수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216-0 (93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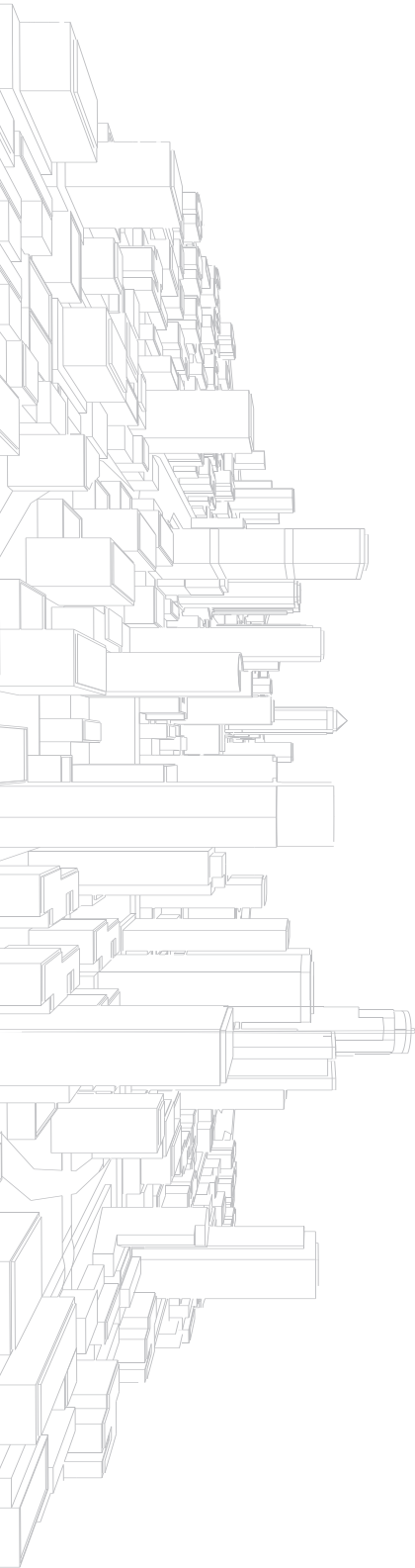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5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행인 김희수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 3284 2600
Fax. 02 3284 2620
<http://www.ricon.re.kr>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